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구조장비 검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지방○○○)
- ② 광주광역시 ○○○○서 지방○○○ ○○○
- ③ 광주광역시 ○○○○서 지방○○○ ○○○
(전 ○○○○서 지방○○○)
- ④ 광주광역시 ○○○○서 지방○○○ ○○○
(전 ○○○○서 지방○○○)
- ⑤ 광주광역시 ○○○○서 지방○○○ ○○○
(전 ○○○○서 지방○○○)
- ⑥ 광주광역시 ○○○○서 지방○○○ ○○○
- ⑦ 광주광역시 ○○○○서 지방○○○ ○○○
- ⑧ 광주광역시 ○○○○서 지방○○○ ○○○
- ⑨ 광주광역시 ○○○○서 지방○○○ ○○○
(전 ○○○○서)
- ⑩ 광주광역시 ○○○○서 지방○○○ ○○○
(전 ○○○○서 지방○○○)

지방○○○ ○○○은 2016.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

○서 및 ○○○○과에서, 지방○○○ ○○○은 2015. 10. 1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서에서, 지방○○○ ○○○은 2016. 8.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6. 2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5. 7.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5. 11.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4. 2.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6.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6. 5. 16.부터 2017. 4. 1.까지 ○○○○서에서, 지방○○○ ○○○은 2012. 10.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에서 근무하면서 구조장비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본부에서는 [붙임] 의 구조장비에 대한 검사업무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 구매일반사항에 따라 규격의 내용을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업무담당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검사업무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업무 이행 시, 법령 및 계약

조건과 납품된 물품을 비교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 서류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는 2016년 구조장비(유해물질분석기-가스분석기) 구매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은 2016년 구조장비(방사성 오염감시기) 구매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지방○○○ ○○○, 지방○○○ ○○○은 구조장비 구매(화학작용제 탐지기)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지방○○○ ○○○, 지방○○○ ○○○은 119구조장비(방사선분광분석기) 구매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지방○○○ ○○○, 지방○○○ ○○○, 지방○○○ ○○○은 2016년 구조장비(가스누출영상탐색기) 구매 납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5건의 구조장비 납품검사담당자들은 납품검사업무 시 규격서 내용 중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서류가 한글번역본 없이 영문으로만 제출되었음에도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납품된 물품에 이상이 없다고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구조장비 납품검사 부적정 내역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능에 대해서 규격서의 성능에 적합하게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구조장비 검사업무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